

신종 불법사채의 대두

변호사 오다 야스히로(織田 恭央)

우츠노미야(宇都宮) 변호사의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불법사채규제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대부업자를 등록, 관리하게 되었으며, 무등록 영업뿐 아니라 등록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불법사채)도 위법으로 규정되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불법사채규제법’ 제정 이후 일본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불법사채규제법의 영향

불법사채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음 두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 ① 불법사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불법사채를 ‘불법사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정당화한다.

제 2 절 ① ‘적발을 피하자’고 판단한 불법사채업자들의 동향

→ 휴대전화를 이용해 운영되는 불법사채

SNS 기반 불법사채 등.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다. 어차피 범죄라면,

차라리 특수사기를 하는 편이 더 수익성이 높음.

→ 감소 추세

제 3 절 ② ‘불법사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수법

1. 매매를 가장한 불법 대출

- ① (상품권 매매형) 금전 난에 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일반인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우표 2 만 엔어치를 1 만 엔에 매도한다.

불법 사채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은 ‘오늘’,

판매자의 상품 납부기한은 ‘다음 주’로 설정

② (선불 매입형) 금전 난에 처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판매한다.

일반인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주류’ 등을 업자에게 판매한다.

매매계약 시, “1 주일 내에 물품을 보내지 못하면 위약금 3 만 엔을 지불한다”고 약정한다.

예를 들어, 술을 5 만 엔에 업자에게 판다.

업자는 대금으로 5 만 엔을 송금한다.

술의 납부기한은 1 주일 후로 정한다.

1 주일이 지나면, 판매자는 원금 반환에 더해 3 만 엔의 위약금으로 총 8 만 엔을 지급하게 된다.

③ (후불 매입형) 금전 난에 처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자 상품’을 구매한다.

일반인이 업자의 상품(전자 콘텐츠 등)을 구매한다.

대금은 1 주일 후에 3 만 엔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전자 상품은 즉시 열람할 수 있다.

구매자는 해당 전자 상품을 열람한 후, 지정된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업자는 ‘감상을 작성한 사례비’ 명목으로 1 만 엔을 송금한다.

2. 채권 양도를 가장한 금융 거래

① (급여 팩터링) ※이미 불법으로 판단 확립

급여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받을 급여채권(11 월 1 일 지급 예정 20 만 엔)을 10 월 15 일에 15 만 엔으로 업자에게 양도한다.

이때, 급여의 수령(근무처에서의 징수)은 회사원 본인에게 무상 위탁된다.

급여일(11 월 1 일)이 되면, 회사원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업자에게 전달한다.

② (사업자 팩터링)

일본의 노동법은 일정 부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이나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대신 청부(도급)계약 형태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 운송 · 건축 분야에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정 발주처에서만 일을 받는 청부업자가 많다.

이러한 청부업자의 보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발주처에서 받을 보수채권(11 월 1 일 지급 예정 20 만 엔)을 10 월 15 일에 15 만 엔으로 업자에게 양도한다.

이때, 보수의 수령은 청부업자 본인에게 무상 위탁되며, 지급일(11 월 1 일)이 되면 청부업자는 발주처로부터 보수를 수령해 업자에게 전달한다.

제 4 절 신종 불법사채의 특징

1. 신종 불법사채업자의 약점은 ‘형식상 정규 기업의 외형을 갖춘 업체’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채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과거처럼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력적 추심은 거의 불가능하다.
2. 이들은 ‘불법사채규제법’ 위반 여부의 경계선을 교묘히 이용하며,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한다.

제 5 절 향후 방침과 소견

1. 이미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들이 실질적인 대출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2. 선물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어느 지점부터를 위법(즉, 실질적인 대출)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3. ‘신종 불법사채’의 대두는 분명 문제이지만, 이는 ‘불법사채규제법’이 거둔 큰 성과의 후속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사채규제법’의 존재 덕분에 신종 불법사채를 명확히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신종 불법사채의 등장을 이유로 해당 법 제정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